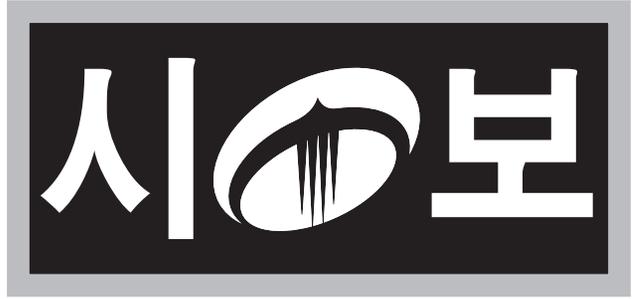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17호 2009. 2. 24(화)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 입법예고 ▶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제2009-280호) ..... 16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제2009-281호) ..... 60
-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09- 291호) ..... 79
-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295호) ..... 85
-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폐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296호) ..... 101
-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제2009 - 297호) ..... 104
- 포항시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 - 298호) ..... 109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 2009 - 323호) ..... 140
- 도로지정 공고(북구청 공고 제 2009 -17 호) ..... 147
- 공 인 공 고 ..... 148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5조의2” 를 “법 제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중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주된도로에서 증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시의회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

**제10조중**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 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 로 한다.

**제10조의2중** “제8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 를 “법 제13조제2항” 으로 한다.

**제11조중** “법 제15조제1항” 을 “법 제20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의2중** “법 제18조제2항” 을 “법 제2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 을 “법 제27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③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 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중 “법 제26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를 “법 제35조, 영 제23조”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중 “법 제46조제4항”을 “법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앞에 “(대지사이에 도로·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중** “영 제113조제1항제2호” 를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영 제113조제2항” 을 “영 제27조의2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영 제113조제3항” 을 “영 제27조의2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영 제113조제4항” 을 “영 제27조의2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법 제48조” 를 “법 제56조” 로 하고, 제2호중 “법 제51조” 를 법 제60조” 로 한다.

**제28조의2중** “법 제50조” 를 “법 제58조” 로 하고, “법 제36조” 를 “법 제46조” 로 한다.

**제42조 제1항중** “법 제69조의2제1항” 을 “법 제8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법 제69조의2제4항” 을 “법 제80조제4항”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p> <p>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 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하는 경우</p> <p>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b> (생략)</p> <p>② (생략)</p> <p>1. ~2.(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lt;신설&gt;</p> <p style="padding-left: 40px;">&lt;신설&gt;</p> <p>③ ~ ④ (생략)</p>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b>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4. <u>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주된도로에서 증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구성) ①</b>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 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b>제6조(구성) ①</b>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b>제7조(회의) ① (생략)</b></p>	<p><b>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은 교통전문가이어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b>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b>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b>----- ----- ----- -----</p>
<p><b>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b> 법 제8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p>	<p><b>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b> 법 제13조제2항----- ----- -----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11조(가설건축물)</b> ① <u>법 제15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② ~ ③ (생략)</p>	<p><b>제11조(가설건축물)</b> ① <u>법 제20조제 1항</u>-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b> <u>법 제18조제2항</u>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한다.</p>	<p><b>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b> <u>법 제22조제2항</u> ----- ----- ----- -----</p>
<p><b>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u>법 제23조제1항</u>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p> <p>1. <u>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u></p> <p>2. <u>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u></p>	<p><b>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b> ① <u>법 제27조제1항</u> ----- ----- ----- ----- ----- ----- ----- ----- ----- -----</p> <p>1. <u>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u></p> <p>2. <u>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u></p>

현 행	개 정 안
<p>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p> <p>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p> <p>② (생략)</p> <p>③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수하여야 하고, 협회는 접수순서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b>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b>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 ③ (생략)</p>	<p>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p> <p>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 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b> ① 법 제27조제3항-----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별 제26조.</b>  <u>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u> 규정에 의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b>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별 제35조.</b>  <u>영 제23조</u> -----  -----  -----  -----  -----  -----  -----  -----  -----  -----</p>
<p><b>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b> <u>별 제32조의</u>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b>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b> <u>별 제42조</u>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7조(도로의 지정) 별 제35조제1항제2호</b>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p> <p>1. ~ 2(생략)</p>	<p><b>제17조(도로의 지정) 별 제45조제1항제2호</b>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b>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별 제46조제4</b>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녹지 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p>	<p><b>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별 제546조제4</b>항 -----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u>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u></p>	<p>----- ----- ----- ----- ----- ----- ----- ----- ----- -----</p>
<p><u>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 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u></p> <p>1. ~ 5 (생략)</p>	<p><u>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 57조제1항</u>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u></p> <p>① <u>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바다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u></p> <p>1. ~ 3 (생략)</p> <p>② <u>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로 포함하여 적용한다.</u></p>	<p><u>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u></p> <p>① <u>법 제60조제3항</u>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법 제60조 제3항----- ----- -----</p>



현 행	개 정 안
<p>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b>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 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p> <p>②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한다.</p> <p>④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p> <p>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p>	<p>④ 법 제61조제4항 ----- ----- ----- -----</p> <p><b>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b>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 ----- ----- -----</p> <p>② 영 제27조의2 제2항 ----- ----- ----- -----</p> <p>③ 영 제27조의2 제3항 ----- ----- -----</p> <p>④ 영 제27조의2 제4항 ----- ----- -----</p> <p>1. 법 제56조 ----- -----</p> <p>2. 법 제60조 ----- ----- -----</p>

현 행	개 정 안
<p><b>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b>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b>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b> 법 제58조 ----  ----- (법 제46조  -----)  -----  -----  -----  -----  -----  -----  -----  -----</p>
<p><b>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b>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 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b> ① 법 제80조제1항 -----  -----  -----  -----  -----  -----  -----  -----  -----</p> <p>② 법 제80조제4항 -----  -----  -----  -----  -----</p>

「포항시 수도급수조례(규칙)」를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2009년 2월 일

포항시 공고 제2009-280호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이유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급수조례를 환경부에서 작성 배포하여 우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전부를 개정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안 제7조)

나. 급수설비관리에 대한 책임의 구분(안 제12조)

다.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부과·징수관련규정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하도록 개정(안 제15조)

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규정 신설  
(안 제37조)

마.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질검사 후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 할 수 있는규정 신설(안 제38조)

#### 3. 관련 근거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상수도과장) 에게 서면, 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번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전 화 : 054-270-5361, 팩스 : 054-270-0069

○ E-mail : mul1215@ipohang.org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육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

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 이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 이란 수도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 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 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지역은 포항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시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2. 공용급수시설: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3. 소화용급수시설: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4. 임시용급수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한다.
5. 보조급수시설 : 전용급수시설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시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시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표1의 수수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1. 시장이 읍·면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급수공사금액이 정액시공비의 2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당해연도 12월10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전용급수시설
- 2. 시설공용급수설비
-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급수**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 6.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8. 기타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발생)**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년)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m<sup>3</sup>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m<sup>3</sup>으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sup>3</sup>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m<sup>3</sup>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sup>3</sup>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sup>3</sup>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 3. 기타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인은 별표1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 배관 및 부속 시설물 등의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규정에 의한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급수를 도용한 자

-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2001.1.10 개정)
  -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부적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처분금액의 10/100이내)
- 2.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건당 50,000원이내)

**제42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가 훼손·망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 2. 제43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3. 시장이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2과 같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점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수 수 료

-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검사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 3. 제9조제4항의 준공검사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 4. 11조제2항의 급수공사대행업지정 수수료
  - 신규 1건당 4,000원
  - 갱신 1건당 2,000원
  
- 5.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 6.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금표

(단위 : m<sup>3</sup>, 원)

구경별 정액요금		사 용 요 금			
계량기 구경(mm)	전당 단가 (원/월)	업 종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동	읍·면
13	500	가정용	1 - 10	450	400
20	1,390		11 - 20	540	490
			21 - 30	680	630
25	2,260		31 이상	790	740
32	3,800	일반용	1 - 50	690	690
40	6,760		51 - 100	980	980
			101 - 300	1,120	1,120
50	10,380		301 - 500	1,220	1,220
75	25,260		501 이상	1,270	1,270
80	29,760	대중탕용	1 - 1000	710	610
100	42,690		1001-1500	980	880
			1501-2000	1,040	940
150	94,000		2001 이상	1,110	1,010
200	132,350	전 용 공 업 용	단일종량제	410	410
250	189,070				
300	210,080				

## 【별표 3】

##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가정용, 담배소매업, 부동산중개소, 연탄소매업,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일반행정), 소매점(5평미만), 문방구(5평미만), 사무소(4인 이하), 도장방, 만화가게, 양곡소매업,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원호단체, 경로당, 그 외 주된 용도가 가사용인 것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전용 공업용	별도 설치한 급수관에 의한 급수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조치
	조례제40조 제1항제1호	조례제40조 제1항제2호	조례제40조 제1항제3호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급수 설비철거명령</li> <li>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li> </ul>
2. 무승인급수 공사(신설공사에 한한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5배(신설공사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단, 사후 승인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부정공사장, 시육자 및 그 방조자 고발</li> </ul>
3. 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li> <li>위 명령 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li> </ul>
4. 계량기매물 공작물설치 및 봉인의 고의파손		5,000원 단, 가정용은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위 명령 불응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li> </ul>
5. 무허가특수 가압시설설치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명령</li> <li>위 명령 불응자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li> </ul>
6. 정수처분중 인급수전의 무단개전		5,000원 단, 가정용은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li> </ul>
7. 업종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li> <li>업종 직권변경</li> <li>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li> </ul>

※ 1개의 행위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사유에 모두해당 할 때에는 위에 정한 기간중 그 벌이 중한 쪽을 적용한다.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 및 지자체별로 급수조례를 다르게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관련된 민원해소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배포한 표준급수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급수장치” 를 “급수설비” 로 용어 변경

나.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 “을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 원인자부담금 “으로 변경

다. “시설분담금” 을 “원인자부담금” 으로 변경(안 제22조)

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안 제28조)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범위내에서 감면

마.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공사비지원(안 제29조)

- 노후옥내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 공사비 지원
- 노후옥내 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 공사비 지원

#### 3.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 4. 관련법령

-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규정을 정하거나 승인 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급수설비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할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 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 1. 수도관 및 부속
-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카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 신청서
-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인이상일 때에 한한다)
-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 및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9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급수분할적용)** 조례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권가구분할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조례제2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가구분할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며, 조례제20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구분할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례제22조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되 수용가에 의한 자가 검침을 할 수 있으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별지 제11호 서식) 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들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옥내시설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시설의 누수 중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 등으로 발견이 곤란 하였을 때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 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

**제20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하여는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2종 최종단계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교체 후 15일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사용량 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실사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 시설규모 ·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3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호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조례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시장이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에는 제2항의 체납액을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경비)** 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년도에 정산한다.

**제27조(증표)**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및 제40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최종단계의 영업용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9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개별통지 후 환부한다.

**제30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자가 조례제37조제2항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규정에 의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범위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④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⑤ 계량기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할때에는 지체 없이 상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비의 지원)** 조례 제38조제2항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8조제3항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신 청 인	급수전위치 (설치위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전 화 번 호	
급수종별		공사구분	신설( ), 개조( ), 수선( )	
월소요량	톤/월	구 경	mm	
건축허가 내 역	허가번호		허 가 일	
	건 축 주		용 도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동시행규칙제4조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급수공사시행 신청을 하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설비 일체를 귀 시에 기부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락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설계카드**

설 계 내 역												과 장	
명 칭	규격	수량	단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토 공													
토사구간			M									담	
인도구간			"									당	
경고테이프설치			"									심	
작업안전시설			식									사	
관로지시편설치			개소									자	
공사안내판설치			식									설	
시멘트구간			m									계	
ASP구간			M									자	
토사구간			"									청	
시멘트구간			M									구	
Con'c구간			M									공	
소 계												사	
2. 관부설공												장	
급수관분기			개소									소	
P.E접합			"									공	
계량기설치			"									별	
P.V.C접합			"									공	
나사접합			"									사	
보호통설치			"									장	
P.E 접합			구									소	
												공	
교통정리인			인									별	
소 계												공	
3. 자재비												사	
P.E이경터			개									구	
부동전			EA									분	
P.E발브소켓			"									계	
스텐엘보			"									량	
급수전엘보			"									기	구경:D mm
수도꼭지			"									승	번호:
P.E정터			"									인	
분기대(일자)			"									일	
P.E관			"									자	
P.E소켓			"									번	
소 계												호	
합 계												시	
간접노무비			%									공	
기타경비			"									자	
일반관리비			"										특기사항
소 계													
이 윤			%										
공급가액													
부 가 세													
도급예정액													
설계수수료			식										
분 단 급			식										
계 량 기			개										
보 호 통			개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개										
부동전			개										
관급계													
총공사비													

[별지 제4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제20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제13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수종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수업종			
변경하고자하는 급수업종	용으로 변경		
변경사유와 급수실태			

20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전 대장정리	조정 부정리	수납채납 정 리	검침카드 의 정리	결 재			비 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급수용 으로 변경								업종 변경 하고 자함



[별지 제6서식]

### 급수사용료 직권가구분할적용 조사서

수용가번호 :

수용가주소 : 포항시 (전화번호 : )

소유자 : 급수사용자 : (소유자와의 관계 : )

상기수용가는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므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20조제1항 및 동시  
행규칙제14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 성명 : (인)

### 급수사용가구 주민등록확인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	
	1		4		7		10	
2		5		8		11		
3		6		9		12		

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급수용구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제15조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신청합니다.

수도전 소재지	포항시	번지		비 고 (상호명등)
급수종류 (업 중)	용	계량기 구 경	mm	
수 용 가 변 호		전 명 의 인		
명의변경 사 유		승 계 명 의 인 (법인면)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수납(체납) 부 정 리	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용구 정지폐전 신고서  
정지폐전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제24조 및 동시행규칙제16조규정 에 의하여( ) 하고자 신고합니다.

수도전소재지				경유
급수종류		급수종별	용	읍·면·동장
수도전 번호	등제 호	년 월 일		
사유				

200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포항시

성명 : (인)

수도전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수납(체납) 부정리	결재			조치코자함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제11호서식]

### 수도계량기 점검카드

종 별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호		소유자			
		사용자			
월분	점검일자	지침수	사용량	검침원성명(인)	비고
년도 12월	월 일				
년도 1월	월 일				
2월	월 일				
3월	월 일				
4월	월 일				
5월	월 일				
6월	월 일				
7월	월 일				
8월	월 일				
9월	월 일				
10월	월 일				
11월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신 청 인	성명(수용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누수 수선 일자		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수 용 가 변 호				
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제37조 및 동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 1매.  
 3. 당월 상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기초생활 수급세대	세대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P)		수용가와 관 계	
수 용 도 사 용 자	수용가명		수 용 가 번호	
	소 재 지			

상기 본인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 상·하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기초생활 수급세대	세대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P)		수용가와 관 계	
수 용 도 사 용 자	수용가명		수용가 번호	
	소 재 지			

상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청구서  
시험 시험

1. 급수전소재지 :

2. 종 별 : 용 급수전번호 : 호

3. 소 유 자 :

4. 청 구 사 유 :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제30조 및 시행규칙제24조규정에 의거 (수리 · 시험) 청구 하오니 (수리 · 시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정리통지서(원부)

공사장소			성 명	
공 사 비			납 부 년 월 일	비고
납 부 액	집 행 액	잔 액		

###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재지 : 포항시

성 명 :

공 사 비			납 부 년 월 일	비고
납 부 액	집 행 액	잔 액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습니다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별지 제16호서식]

###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고객번호	
	주소			업종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m <sup>2</sup> )					
처리용량(m <sup>3</sup> /일)				사용수량(m <sup>3</sup> /일)	
처리방법					
설치일자				가동일자	
주용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귀하

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및 제7조규정에 의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시설(주소)				
총 공사비용		만원( ₩ )		
지원신청금액		만원( ₩ )		
공사기간				
시공업체	상호	대표자	(전화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2월 일

포항시 공고 제2009-281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규칙) 제정.
- 나.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조례 없이 수도급수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만 일부 부과·징수를 하여왔으나,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조례(규칙)를 제정 운영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및 별표1)
- 다.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및 별표 2, 3)

**3. 관련 근거**

- 가.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시행령제65조
- 나. 수도법제72조(손괴자부담금) 및 시행령제6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상수도과장) 에게 서면, 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번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전 화 : 054-270-5361, 팩스 : 054-270-0069

○ E-mail : mul1215@ipohang.org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도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2. “원상복구비” 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3. “급수차의 사용경비” 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4. “도로복구비” 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 “도로결빙 방지비용” 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6. “출장경비” 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7. “지원경비” 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 “홍보비” 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

-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이하 “누수 및 퇴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 양에 대한요금
-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6. 출장경비
- 7. 지원경비
-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3와 같다.
-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2과 같다.
-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도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도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
-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

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포항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공유일 및 야간작업은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며, 기타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
-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은 손괴자 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 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 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이설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사업**

-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에 의한 개발사업
- 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마. 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 바. 기타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 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항 해당 건축물)
- 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항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 가.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5항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 가.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항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 가.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9항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 가.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7항 해당 건축물)

**7. 기타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항 해당 건축물)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항 해당 건축물)

- 다.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항 해당 건축물)
- 라. 종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6항 해당 건축물)
- 마.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8항 해당 건축물)
- 바.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항 해당 건축물)
- 사. 수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2항 해당 건축물)
- 아.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항 해당 건축물)
- 자.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항 해당 건축물)
- 차.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6항 해당 건축물)
- 카.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7항 해당 건축물)
- 타.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8항 해당 건축물)
-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9항 해당 건축물)
- 하.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0항 해당 건축물)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1항 해당 건축물)
- 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2항 해당 건축물)
- 더. 방송통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4항 해당 건축물)
- 러. 발전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5항 해당 건축물)
- 며.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6항 해당 건축물)
- 벼. 관광휴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7항 해당 건축물)
- 샤. 장례식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8항 해당 건축물)

[별표 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 과 대 상 사 업	산 정 기 준
대 단 위 개 발 사 업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 거 시 설	세대수 × 2.78인 × 0.3 m <sup>3</sup> / 인·일 × 1.28
숙 박 시 설	건축연면적 ( m <sup>2</sup> ) × 0.024 m <sup>3</sup> / m <sup>2</sup> ·일 × 1.28
교 육 연 구 시 설	건축연면적 ( m <sup>2</sup> ) × 0.008 m <sup>3</sup> / m <sup>2</sup> ·일 × 1.28
의 료 시 설	건축연면적 ( m <sup>2</sup> ) × 0.022 m <sup>3</sup> / m <sup>2</sup> ·일 × 1.28
판 매 시 설	건축연면적 ( m <sup>2</sup> ) × 0.021 m <sup>3</sup> / m <sup>2</sup> ·일 × 1.28
기 타 시 설	건축연면적 ( m <sup>2</sup> ) × 0.012 m <sup>3</sup> / m <sup>2</sup> ·일 × 1.28

註)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_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_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_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_1$  = 초당 손실수량( $m^3/sec$ )

$Q_2$  = 시간당 손실수량 ( $m^3/hr$ )

$C$  = 유량계수 ( $C_a \times C_v$ )

$C_a$  = 수축계수 (0.666적용)

$C_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 $m^2$ ) =  $10,000a(cm^2)$

$g$  = 중력가속도( $9.8m/sec^2$ )

$H$  = 수두( $m$ ) =  $10p$

$p$  = 수압( $kg/cm^2$ )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m^3$ )

$A$  = 면적( $m^2$ )

$L$  =연장 ( $m$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 가. 공사명
  -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납부금액
- 2. 납부기한
- 3. 납부장소
- 4. 납부자
-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7조 (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8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처 :
- 시 공 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공사 중 상수도관 D = mm( )부분을 년 월 일 시경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아 래 -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 수 수 량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200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

회 사 명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b>납 부 서</b> <b>(고 지 원 부)</b>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금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b>상기 금액을 납부함</b>	
년 월 일	
<b>포상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b>	
<b>수입금 출납원</b>	

<b>영수필통지서</b> <b>(수납은행보관용)</b>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금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b>상기 금액을 납부함</b>	
년 월 일	
<b>포상시금고징수관</b>	

<b>영수필통지서</b> <b>(사업소통보용)</b>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금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b>상기 금액을 납부함</b>	
년 월 일	
<b>포상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b>	
<b>수입금 출납원</b>	

<b>영 수 필</b> <b>(개인보관용)</b>	
제200 - 호	상수도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금수수익	(목)일 반 용
일금 원정	
₩ _____	
주 소 :	
납 부 자 :	
세부내역 :	
<b>상기 금액을 납부함</b>	
년 월 일	
<b>취급자</b>	
<b>(인)</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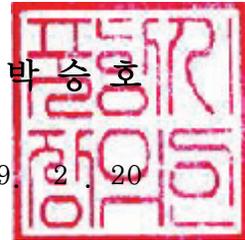
포항시 공고 제2009- 291호

###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2. 20



###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조항의 변경 및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의 변경 및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추가 (안 제2조)
- 나.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에 관한 조항의 변경 (안 제3조)
-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조항의 변경 (안 제5조)
- 라. 포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변경 (안 제7조)

#### 3.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270-2263, FAX270-227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를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 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4. 판매시설
-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6. 의료시설 중 병원
- 7. 업무시설
- 8. 숙박시설
- 9. 위락시설
-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하고, “법 제11조” 를 “법 제9조” 로 한다.

**제5조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하며, 제2항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 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로 한다.

**제7조중** “영 제24조” 를 “영 제12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b>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li> <li>2. 업무시설</li> <li>3. 숙박시설</li> <li>4. 판매 및 영업시설</li> <li>5. 위락시설</li> <li>6.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통신용시설</li> <li>7. 의료시설중 병원</li> <li>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li> </ol>	<p><b>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b>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li> <li>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li> <li>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li> <li>4. 판매시설</li> <li>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li> <li>6. 의료시설 중 병원</li> <li>7. 업무시설</li> <li>8. 숙박시설</li> <li>9. 위락시설</li> <li>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li> </ol>
<p><b>제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b>          ①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b>제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b>          ①----- 영 제12조 -----          ----- 법 제9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천분의 1이상</p> <p>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천분의 5이상</p>	<p>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 ----- ----- -----</p> <p>1. 영 제12조 ----- ----- 1천분의 7이하</p> <p>2.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 1천분의 7이하</p>
<p>제7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포항시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설치) 영 제14조 ----- ----- ----- ----- ----- -----</p>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2월 20일

포항시 공고 제2009-295호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함과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내용 개정.

**2. 주요내용(개정안 전문 별첨)**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안 제2조)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안 제8조 ~ 제10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주소, 거소, 체류지
-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4-270-209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주민투표조례” 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居所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주소·주민등록번호” 를 “주소나居所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주민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 략) <u>(신 설)</u></p>	<p>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20세 이상의</u>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u> ----- ----- ----- -----</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u>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 ----- <u>주민등록번호나</u> <u>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u>·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u>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u>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u> <u>외국인등록번호</u>,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②시장은 <u>주민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 ----- ----- ----- ③~④ (현행과 같음)</p>

## □ 신·구 별지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청구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대표자</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함 시 장 귀 하</b></td> </tr> <tr> <td colspan="4">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body>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함 시 장 귀 하</b>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청구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0%;">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대표자</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함 시 장 귀 하</b></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                      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body>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함 시 장 귀 하</b>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 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함 시 장 귀 하</b>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함 시 장 귀 하</b>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 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대표자 증명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 style="width: 7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 기간</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함 시 장                      (인)                 </td> </tr> <tr> <td colspan="4">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body> </table>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함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p>【별지 제2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대표자 증명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 style="width: 70%;"></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 기간</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장 (인)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                      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body> </table>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 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함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 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 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 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 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p>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b>포 함 시 장 귀하</b></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 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p>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b>포 함 시 장 귀하</b></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p>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 <b>포 함 시 장 (인)</b></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p>포함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 <b>0 0 0 0 장 (인)</b></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현 행	개 정																																																																								
<p>【별지 제6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청구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청구인</td>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번호</td> </tr> <tr> <td>대표자</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항 시 장 귀하</b></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body> </table>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별지 제6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청구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청구인</td>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번호</td> </tr> <tr> <td>대표자</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항 시 장 귀하</b></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body> </table>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별지 제7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의 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신청인</td>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번호</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대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항 시 장 귀하</b></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body> </table>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p>【별지 제7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의 신청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신청인</td>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번호</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대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포 항 시 장 귀하</b></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body> </table>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포 항 시 장 귀하</b>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2월 20일

포항시공고 제2009-296호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개정안 전문 별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4-270 -209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의 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 ----- ----- -----</p>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2. 23

포항시 공고 제2009 - 297호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내지 8조)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 기 능 : 심의기능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임 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1차에 한하여)
- 마.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봉사와 광고물 담당,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 - 2363, FAX 270 - 2460, 이메일 : [gihee9094@korea.kr](mailto:gihee9094@korea.kr))에 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 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 @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항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적립금
  3. 국·도비 보조금
  4.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② 제1항 2호의 적립금에 있어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기획예산과 협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기획예산과 협의)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안
- 2. 기금결산보고서안
-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이 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2. 23

포항시 공고 제2009 - 298호

**포항시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 7.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 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는 물론 「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 승인된 구룡포읍대보면 일원을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특정구역 지정시 경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제34조, 별표2)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

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 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확인 후 등록 사항을 직권 말소

라.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 2)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

마.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의 2 제1항 신설

▷ 홍보용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면적 : 10㎡ ⇒ 50㎡

전체면적 : 40㎡ ⇒ 150㎡

바.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의 2 제2항 신설

▷ 지역특화발전특구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등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봉사과 광고물 담당,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 - 2363, FAX 270 - 2460, 이메일 : [gihee9094@korea.kr](mailto:gihee9094@korea.kr))에 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 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 @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 관련 홍보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홍보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2.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역특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 을 “영 제33조제8항” 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10조제3항” 을 “제10조제6항” 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공포한 날)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 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의 가. 일반 옥외광고물, 별표 5, 별지 제7호의 2, 별지 제7호의 3, 별지 제10호, 별지 제1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2】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시지역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3,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3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2,000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15,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아·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35,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15,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시지역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 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 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3만원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22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32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42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64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65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0만원 +15만원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8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4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25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33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49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58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67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79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p>나. 현수막</p> <p>(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p>	<p>·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8만원 12만원 14만원</p> <p>22만원 25만원 32만원</p> <p>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p> <p>8만원 12만원 14만원</p> <p>22만원 25만원 32만원</p> <p>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p> <p>8만원 12만원 14만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15만원이상35만원미만</p> <p>·35만원이상80만원미만</p> <p>·8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이하</p>	<p>20만원 25만원 30만원</p> <p>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p>
<p>(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p> <p>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p>		<p>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p> <p>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80만원 미만 ·8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 이하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250만원이상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500만원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

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 2서식】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예시(제33조의2 관련)



【별지 제7호의 3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09’ 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 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b>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b>		처리기간  3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 사유		
<p>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포항시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54g/m<sup>2</sup>)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가 · 신고 번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과 「<u>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u>」(이하 “<u>지역특구법</u>”이라한다)-----</p>
<p><b>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b>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b> ①-----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u>경상북도 지사와 사전협의</u>를 거친 후 <u>·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b>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b>                      ①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                      2. ----                      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18조</b>(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공공목적에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③ 삭제</p> <p>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p> <p>제19조의2(광고물등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내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 관련 홍보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홍보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별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교통 안전을 위하여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u></p> <p>②<u>지역특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등은 별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u></p> <p>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②----- ----- ----- ----- ----- 영 제33조제8항의 -----</p> <p>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별 제10조 제6항의 ----- ----- ----- ----- ----- -----</p> <p>제31조(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 등)③<u>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u></p>

현 행	개 정 안
	<p><u>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u></p> <p><u>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u></p> <p>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보이는 곳에 게시)</p> <p>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p> <p>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p> <p><u>제33조2(광고물 실명제)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는 "실명제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p> <p>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①</u>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u></p> <p><u>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별표 2】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단위	기준	시지역	구분	단위	기준	시지역
광고물의종류				광고물의종류			
1. 가로형간판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 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 등	15,000 1,000 4,000	3.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 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가향과 같음		가. 벽면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가향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15,000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15,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나. 삭제		삭제	삭제
9. 교통시설(지하도)	개	·5제곱미터 이하	9,000	9. 교통시설(지하도)	개	·5제곱미터 이하	9,000
이용 광고물		·5제곱미터 초과	10,000	이용 광고물		·5제곱미터 초과	10,000

현 행				개 정 안			
구분	단위	기 준	시지역	구분	단위	기 준	시지역
광고물의종류				광고물의종류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선박양측면	대		10,000	나. 비행기선박양측면	대		10,000
다. 차량 양측면	대		2,000	다.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10제곱미터 이하	3,000	가. 현수막	개	·10제곱미터 이하	3,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000
		1제곱미터당 가산				1제곱미터당 가산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10제곱미터 이하	7,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10제곱미터 이하	7,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500			10제곱미터 초과시	1,500
		1제곱미터당 가산				1제곱미터당 가산	
15. 벽보	매	·50매당	3,000	15. 벽보	매	·50매당	3,000
16. 전단	매	·1,000매당	3,000	16. 전단	매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역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역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1) 도로(보도를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1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20만원미만		(가) 연면적1제곱미터미만	8만원이상35만원미만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0.6~0.8제곱미터이하		13만원	-0.6~0.8제곱미터이하		22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19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32만원
(나) 연면적1제곱미터이상2제곱미터미만	20만원이상40만원미만		(나) 연면적1제곱미터이상2제곱미터미만	35만원이상65만원미만	
-1.0~1.3제곱미터이하		25만원	-1.0~1.3제곱미터이하		42만원
-1.4~1.6제곱미터이하		30만원	-1.4~1.6제곱미터이하		50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39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64만원
(다) 연면적2제곱미터이상3제곱미터미만	40만원이상80만원미만		(다) 연면적2제곱미터이상3제곱미터미만	65만원이상130만원미만	
-2.0~2.3제곱미터이하		45만원	-2.0~2.3제곱미터이하		75만원
-2.4~2.6제곱미터이하		60만원	-2.4~2.6제곱미터이하		100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3제곱미터이상	80만원에3제곱미터초과면적의0.5제고미터당10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0만원	(라) 연면적3제곱미터이상	130만원에3제곱미터초과면적의0.5제고미터당15만원을 가산한 금액	130만원 +15만원
(2)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2)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1제곱미터미만	3만원이상10만원미만		(가) 연면적1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15만원미만	
-0.5제곱미터 이하		5만원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0.6~0.8제곱미터이하		7만원	-0.6~0.8제곱미터이하		12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9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14만원
(나) 연면적1제곱미터이상2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나) 연면적1제곱미터이상2제곱미터미만	15만원이상50만원미만	
-1.0~1.3제곱미터이하		15만원	-1.0~1.3제곱미터이하		25만원
-1.4~1.6제곱미터이하		20만원	-1.4~1.6제곱미터이하		33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49만원
(다) 연면적2제곱미터이상3제곱미터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다) 연면적2제곱미터이상3제곱미터미만	50만원이상80만원미만	
-2.0~2.3제곱미터이하		35만원	-2.0~2.3제곱미터이하		58만원
-2.4~2.6제곱미터이하		40만원	-2.4~2.6제곱미터이하		67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 역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 역
(라) 연면적 3 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5만원	(라) 연 면 적 3 제 곱 미 터 이상	·80만원에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8만원
나. 현수막			나. 현수막		
(1)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1)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면적 3제곱미터 이하	·5만원이상10만원미만		(가)면적 3제곱미터 이하	·8만원이상15만원미만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9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5만원이상35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3만원	-3.0~3.7제곱미터이하		22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9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32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이상8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5.0~6.0제곱미터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7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2)지주·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2)지주·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연면적3제곱미터 미만	·5만원이상10만원미만		(가)연면적3제곱미터 미만	·8만원이상15만원미만	
-1.0제곱미터이하		5만원	-1.0제곱미터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이하		9만원	-2.1~3.0제곱미터이하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5만원이상35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3만원	-3.0~3.7제곱미터이하		22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9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32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이상8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5.0~6.0제곱미터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75만원
(라)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라)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역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역
(가)면적3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10만원미만		(가)면적3제곱미터미만	·8만원이상15만원미만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9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나)면적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5만원이상35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2만원	-3.0~3.7제곱미터이하		20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8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다)면적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다)면적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35만원이상8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5.0~6.0제곱미터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7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가산한금액	50만원 +10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4) (1)내지 (3)의 현수 막을 설치하여 차량통 행이나 일반인의 보행 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장당 5천원이상3만원		(4) (1)내지 (3)의 현수 막을 설치하여 차량통 행이나 일반인의 보행 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장당 8천원이상5만원	
(1)일반 광고내용	이하		(1)일반 광고내용	이하	
-1~10장이하		장당10천원	-1~10장이하		장당17천원
-11~20장이하		장당15천원	-11~20장이하		장당25천원
-21장이상		장당25천원	-21장이상		장당42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광고내용			(2)법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15천원	-1~10장이하		장당25천원
-11~20장이하		장당20천원	-11~20장이하		장당33천원
-21장이상		장당30천원	-21장이상		장당50천원
라. 전단	·장당3천원이상 3만원		라. 전단	·장당5천원이상 5만원	
(1)일반 광고내용	이하		(1)일반 광고내용	이하	
-1~10장이하		장당5천원	-1~10장이하		장당8천원
-11~20장이하		장당10천원	-11~20장이하		장당17천원
-21장이상		장당15천원	-21장이상		장당25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광고내용			(2)법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15천원	-1~10장이하		장당25천원
-11~20장이하		장당20천원	-11~20장이하		장당33천원
-21장이상		장당30천원	-21장이상		장당50천원
2.법 제11조제2항에따른 옥외광고업의휴폐업 또 는 업무제개에관한 신 고를하지 아니한 자			2.법 제11조제2항에따른 옥외광고업의휴폐업 또 는 업무제개에관한 신 고를하지 아니한 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 역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 지 역
가. 30일미만		15만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90일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40만원	나. 30일이상90일미만	·15만원이상50만원미만	25만원
다. 90일이상180일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70만원	다. 90일이상180일미만	·50만원이상80만원미만	67만원
라. 180일이상1년미만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30만원	라. 180일이상1년미만	·8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17만원
마. 1년이상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40만원	마. 1년이상	·1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17만원
<u>&lt;신 설&gt;</u>	·200만원이상300만원이하		3.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0만원이상100만원미만	80만원
4.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가. 연1회 위반자	·1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200만원
가. 연1회 위반자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25만원	나. 연2회 위반자	·250만원이상500만원이하	500만원
나. 연2회 위반자	·50만원이상100만원이하	45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100만원	5.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0만원이상100만원미만	80만원
<u>&lt;신 설&gt;</u>			가. 연1회 위반자	·1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200만원
			나. 연2회 위반자	·250만원이상500만원이하	500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b>【별지 제10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80%;">제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0%;">처리기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주민등록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업소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전 화 번 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주 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⑥신 고 번 호</td> </tr> <tr> <td colspan="2">⑦재교부신청 사유</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서류 :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                     수수료                      포항시 제증                      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td> </tr> </table>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3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신청 사유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포항시 제증 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3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신청 사유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포항시 제증 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b>【별지 제17호 서식】</b>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변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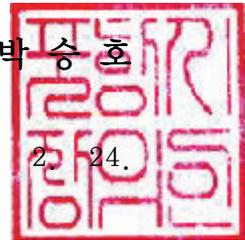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 - 323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2. 24.

- 1. 공 고 기 간 : 2009. 3. 1. ~ 2009. 3. 15. (15일간)
- 2. 폐 차 장 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흥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1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광고처리 내역

◆ 총건수 : 34 ◆ 공고기간 : 2009-03-01에서 2009-03-15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주 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성 명	차 명 주민번호			
2008-379	경남5고1726 김군자	다마스 57011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번지 3호 6/19 중흥S-클래스진 영1단지 101동 1303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 계3리 울진상회 밀 150㎡ 지점 골목상에	창원시청교관, 징수, 남세 창원시차량등록시영 소차등 김해시청교행, 세우 포항시청교행 국민 건강보험공단창원지사지관
2008-380	경북70나19483 이수영	이스타나-숫12교 치 5904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 141번지 1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 성리 141번지 흥해시장 주차장 옆 도로상에	포항시북구청사환, 주민, 건교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북부경찰서경교
2008-383	10거1336 편무일	프라이드 7007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 번지 19호 17/2	포항시 남구 대도동 29- 4 한마음공인중개사 앞 도로상에	포항시남구청건교, 사환, 세우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2008-389	09저5374 박세활(합동상사)	FF쏘나타LPG 690302-*****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산 36번지 3호	포항시 남구 해도동 29- 4앞 장수경로당 도로상 에	경산시청세우, 교행 포항시남구청건교 포항시 북구청건교 천안시청교통 대전광역시서구청교 통 대구북부경찰서교통
2008-393	경북71가3297 의료법인 해동의료재 단	이스타나급차 171133-*****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번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 덕리 351-35 삼성병원 뒷편 노상에	김재원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6-2단지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23-4사건2000가단292 김동제 경상북도 안동 시 태화동 671-25사건2000카함66 김재원 대구 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6-2사건2000카함93 구 민연금관리공단안동지사정기일 안동시정환강, 세정, 교통 대구광역시남구청지교 안동경찰서 경교 대구광역시청주차 포항시청교행

2008-395	경북27라7021 배후호	엘란트라 6009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0 번지 2호 28/4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5-10 명성송도타운3차 옆 도로상에	포항북부경찰서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 부지사자차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 남구청세무 포항남부경찰서경교
2008-396	부산3머4746 최낙광	프린스1.8AT 5703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241번 지 28/1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부산광역시서구청교통 부산광역시연계구청환 경,세무,교통 부산광역시해운대구경교통,시 세,환위 부산광역시청공인 부산연산경찰서교 통 부산해운대경찰서교통
2008-397	경북80기6076 박재협	포터장축슈퍼캠 6409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967 번지 2호 6/6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포항시남구청환경,세무,사회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서울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36-7420007단 9013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징관 포항 남부경찰서교통
2008-398	경북1호7905 이명복	티코(TICO) 7309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산 17번지 19/5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행 포 항시북구청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 사지관,장수
2008-399	서울36디5688 지오건설-주	코란도디젤-6 101814-*****	서울특별시 중로구 운니동 98번지 78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서울특별시중로구청세무,환경,교지,교행,세 이 부산광역시동구청교통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교통 서울특별시상동구청교지 부산광역시수 영구청교통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교통 서울중 부경찰서교통
2008-400	대구28모5098 정중화	엑셀 5611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776번지 45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건교,세무,환경,징수 대 구광역시남구청지교 대구광역시서구청지교
2008-401	부산75니4897 홍성표	다마스(DAMAS) 55081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18번지 200호 3/4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종합패 차장내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징수,교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시세 부산광역시남구청교통,세무, 환위 부산해운대경찰서교통

2008-402	경북2녀6537 김재근	세피아 7504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 92번지 1호 24/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 종합패 차장내에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 등 포항시북구청세무
2008-403	경북1후4185 이대희	케이탈오토 6710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92번 지 36호 16/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 종합패 차장내에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 등 포항시청교통 포항시남구청세무,건교 동부 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 92001카단12340
2008-404	경북1포9210 최정미	시에로 5410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 리 54번지 4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호 동해지구 종합패 차장내에	창원시청교과 포항시북구청세무 국민건강보 험공단포항북부지사지관,장수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2008-405	대전80나4060 대진토건(주)	와이드봉고더블 캠 3148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7번지 1 호 탄방빌딩 501	포항시 남구 오천읍 272-8번지 가야성 뒷고 기 앞 도로상에	양철순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2-1497가 합2610 대전광역시유성구청지교 대전광역시서 구청환보,세무,환경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 소세무 대전둔산경찰서교통 대전광역시청교통
2008-406	경북6가4757 (주)상전기압	그레이스 5068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33번 지 206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패 차장내에	포항시남구청사회,세무,주민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수 포항시 청교통,환위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남부경 찰서교통 포항시북구청건교
2008-407	경북41라5102 박정미	그랜저 6910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178 번지 17/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패 차장내에	대구동부경찰서경교 경주경찰서경교 포항시 청교통 조승래 포항시 북구 장포동 장포주공1 차 110/15022004카단4833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2008-408	경북41다4270 안희자	마티즈 6902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00 번지 40호 13/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L(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 경주경찰서경교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2002카단7569 국민건강보험공단경주지사자장 서울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2003카단62823 경주시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
2008-409	경북3다18446 김성환	프린스2.0MT 5712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98 번지 1호 6/4 그립피아 102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포항시남구청환경.세무 경주시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2008-410	경북3나15632 신인정	포텐사오토 5304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44 번지 3호 효자빌라 나-10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포항시청세무.교행 박상록 포항시 용출동 우방타운 102/150694카단4831 대한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95카단5139 포항시남구청장수.세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정지교 대구광역시달서구청교행 부산금정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2008-411	경북3가4567 관명주택(주)	그랜저 5068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496 번지 5호 (41-102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행 포항시북구청세무.건교 경주시청교행 포항시청환위
2008-412	경북70가4132 한희락	타우너엘피지 6909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림동 1번 지 68호 13/5 수영하이츠빌라 가동 501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대전광역시중구정지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2008-413	경북73가2997 양동호	타우너엘피지 6511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53 번지 3호 27/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페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세무 포항시청환위

2008-414	경북74고5370 권오형	갤로퍼승합 63080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20번지 3호 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 칠곡군청세무, 지경, 환경 대구광 역시수성구청지교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2002가단390 칠곡경찰서 교통 대구광역시서구청교통 포항남부경찰서경 교 포항시북구청건교 포항시남구청시환 울릉 군청세무, 환보, 건설, 환심 국민건강보험공단포 항남부지사지장
2008-415	경북80가2911 양성준	포터초장축슈퍼 캠 5802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8 번지 16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의료보험조합포의 포항시정시민 대한 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36- 7498가단1965 포항시북구청환위, 세무, 사회, 건 교, 주민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북부 경찰서교통 포항시남구청건교
2008-416	경북80가6895 (주) 동진	포터더블캠 2046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212 번지 30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남구청사회, 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 항남부지사지장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근 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동2가 94-2672004가단6983
2008-417	경북80다1634 이태용	포터초장축더블 캠 5210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잠동 245 번지 13호 3/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23-4단지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 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통 국민건강보험공 단포항북부지사장수 포항시북구청사회, 건교, 주민
2008-418	경북80다9120 이만용	코란도11-밴 7108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내 리 1071번지 16/개나리아파트 나동 109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코오롱할부금융(주) 경기과천시 별양동 코오 롱타워7층단지 포항시남구청사회, 주민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국민건 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장
2008-419	경북80다9419 최진영	봉고프린티어 7411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18번지 11호 11/ 상양전원타운 103 동 308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남구청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 지사지장 포항북부경찰서경교 삼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7단지 포항시차 량등록사업소차등 항등특사업소차등

2008-420	경북80라7756 주익규	포터초장축슈퍼 캠 6912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번지 창포주공 110-140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포항시북구청환위, 사회, 건교, 주민 부산광역시청교기, 물류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남부경찰서교통 경주시청교행 포항시남구청건교, 주민
2008-421	경북81나6352 인영석	봉고프린티어 7201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518 번지 30/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경주경찰서경교 경주시청환경, 인강, 교행 상 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배동 87번지 시간2002카단3778 포항시북구청건교, 주민 포 항시남구청건교, 주민 포항남부경찰서경교 상 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번지단지
2008-422	경북81다1492 홍태근	봉고프린티어 630711-*****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73번지 21호 (4/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주지사자진 경주시청환 경, 교행, 용강 포항시청교행 경주경찰서경교 초록원(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01번지 4호사건2003카단10799 삼성캐피탈(주) 서울특 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
2008-424	84다6345 최재홍	포터슈퍼캠 7903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8번지 24호 24/7 302호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 호동사무 앞 해변도로상 에	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남구청사회, 주민, 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험 공단포항남부지사자진 서울특별시강남구청세 이, 환경 서울남부경찰서 교행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09 -17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지정일자
홍해읍 학천리 산63-1외 1필지	학천리 629-3 630-1, 708-5	702.0	95.33	6m	2009.02.19

포항시 북구청장

2009. 2. 19

문의처 : 건축과(054-240-7474)

포항시공고

##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포 항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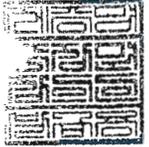
2009. 2. 24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09. 2. 24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로 인한 개각 등
3. 신중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1. 신 조 공 인

신 조 공 인			
공인명 및 모형	인 영	공인명 및 모형	인 영
제증명 포항시남구 제철동장인 발급용		중앙동 포항시북 구청장인 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FAX민원 죽장면 장의인 발급용		제증명 중앙동 장의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제증명 죽장면 장의인 발급용		FAX민원 중앙동 장의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죽장면 포항시북구 구청장인 민원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2. 폐 기 공 인

폐 기 공 인			
공인명 및 모형	인 영	공인명 및 모형	인 영
제증명 포항시남구 제철동장인 발급용		제증명 죽장면 장의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FAX민원 죽장면 장의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2.1cm 정방형			